##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홍성국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793

발의연월일: 2020. 9. 11.

발 의 자 : 홍성국 · 이상민 · 한준호

민병덕 • 박재호 • 강선우

이형석 · 송재호 · 이원욱

임종성 · 인재근 · 김병욱

이용빈 · 양기대 · 김경협

유관석 · 김성주 · 이용우

이개호 의원(19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일정한 죄를 범한 경우,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서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예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 하고 있음.

그런데 방위력개선사업 등에 있어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·수집 및 누설하여 국익을 저해하는 범죄행위를 한 경우, 기존의 참전유공자는 예우가 지속되는 반면에 이들로부터 청탁 등을 받고 군사기밀을 제공하여 처벌받은 현역군인 등은 불명예제대 등으로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함이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참전유공자로 예우를 받는 사람이 「군사기밀 보호법」을 위

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참전 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 39조제1항제3호사목 신설). 법률 제 호

##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9조제1항제3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사. 「군사기밀 보호법」 제11조, 제11조의2, 제12조, 제13조, 제13 조의2 및 제15조의 죄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) 제39조제1항제3 호사목의 개정규정은 참전유공자가 이 법 시행 후 행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9조(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	제39조(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
의 배제) ① 국가보훈처장은	의 배제) ①
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	
받을 참전유공자가 다음 각 호	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	
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	
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	
참전유공자가 받을 수 있는 모	
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.	
1. • 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
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	3
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	
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	
그 형이 확정된 사람	
가. ~ 바. (생 략)	가. ~ 바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사. 「군사기밀 보호법」 제1
	1조, 제11조의2, 제12조,
	제13조, 제13조의2 및 제1
	<u>5</u> 조의 죄
4. • 5. (생 략)	4.•5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